

[] 여객자동차운송사업
[] 자동차대여사업
[]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
[]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

법인합병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(신고)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 5일
합병 하려 는 법인	갑	법인의 명칭(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	을	법인의 명칭(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		법인의 명칭(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신고 내용	사업의 종류		노선 또는 사업구역
	합병의 방법 및 조건		합병하려는 날짜
	합병사유	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·제35조·제49조의9·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·제71조·제93조의9·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피합병법인 대표자(갑) (서명 또는 인)

피합병법인 대표자(을)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존속(설립)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[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] 귀하
시 · 도 지 사

신고인 제출서류	1. 공통 가.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.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.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라.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.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. 신설 법인의 경우 가.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) 1부 나.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.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	수수료 3,000원
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